

협성대학교 계약학과 학부 신(편)입학원서

지원학년도	2020학년도 전기			전형구분	신입학() / 편입학()		사진 (3cm x 4cm)	
산업체 재직 기간	년 개월 재직			지원학과명				
지원자 성명	한글명				주민등록번호			
	영문명							
지원자 학력사항	최종출신학교명 (대학 또는 고등학교)	(졸업일자: . . .)			<input type="checkbox"/> 학년수료			
	최종출신학과명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(예정)			
지원학과 교육장소	교육장소(필히기재) 및 연락처 :							
재직사항	기관(업체)명					사업자등록번호		
	기관주소					전화번호		
재직기관 주소지	우편번호 : 주소지 :						유선 연락처 ()	
							개인 핸드폰	
재직기관(업) 신원확인 재정보증자	성명		관계		근무처 및 직위		공식 연락처	
	협성대학교 계약학과 지원 희망자의 신원 및 재정 보증 등에 대하여 확약(확인) 책임에 대해 보증함							

상기인은 2020학년도 전기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학부과정 입학 지원자로서 재학기간 및 학위취득 과정 중 협성대학교학칙 및 제반 규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입학지원서로 작성하여,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원서통합제출자
(인)

지원자 (인)

1명이 서류 등급해서 가져온다.

협성대학교총장 귀하

원서접수자
접수자 날인으로 기재하지 마세요

※ 구비 제출 서류

* 지원학생 : 입학원서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(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),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 (본교소정양식), 계약학과 지원자 사전고지 확인서 (지원자 날인포함)

※ 해당기관(업체) :

- 계약학과 개설요청서
- 계약학과 입학주천서 1부
- 교육비 부담 확약서 1부
-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(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가입 사업장 확인용)
- 계약학과 추천자 재직 증명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2부 (본교소정양식)

협성대학교 계약학과 개설요청서(협약업체용)

본사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여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개설요청서로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
※ 계약학과명 : 본인이 자문하는 학과명 .

※ 개설추천강좌

순번	강좌명	강좌내용	비고
1			
2		0241도 징 .	
3			

2020 년 월 일

요청 산업체(기관)명 : (직인)

대표자 : (인)

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입학 추천서

(1인 지원 추천인 경우 작성 제출)

과정명 : 학부신입학 () / 학부편입학 () / 석사과정 () / 박사과정 ()

성 명 :

생년월일 : (만 세)

부서명 :

직급(위) :

입사년월일 :

(근무연한 년)

위 사람을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2020학년도 전기 ()학과
지원자로 추천합니다.

20 년 월 일

_____ (협약업체명) : (대표자) (인)

협성대학교 총장 귀하

계약학과 학생추천서 (협약업체용)

(2인 이상인 지원 추천인 경우 작성 제출)

본사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여 귀 대학교 계약학과 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.

※ 추천자 인원 :

순번	지원 학과명	추천 대상 성명	생년월일	직위 (직급)	연락처	e-mail	비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
2020 년 월 일

추천 산업체(기관)명 :

대표자(추천자)명 : (직인)

협성대학교 총장 귀하

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신청서

1. 인적사항

학번	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e-mail	비고
민서12팀					

2. 재직기간 : 20 . . . ~ 20 . . .

※ 재직증명서 첨부

3. 근무평가 (상, 중, 하 평가한 후 세부적 평가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대표자 학생사랑

상기와 같이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 산업체(기관)명 :

대표자명 : (직인)

협성대학교 총장 귀하

교육비 부담 확약서

성명 : 생년월일 : (만 세)

부서명 : 직급(위) :

입사년월일 : (근무연한 년)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~ 8조와
관련하여 본 산업체 직원의 등록금을 입학시부터 졸업(학위취득 수료)시까지 매학기
50/100 이상을 계약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확약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_____ (협약업체명) (대표자명) (직인)

협성대학교 총장 귀하

계약학과 (재교육형) 지원자 사전 고지 확인 사항

확인내용	근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계약학과”란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(재교육형)을 위한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 	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운영 질의·응답 자료집 (2015.12) 【Q1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체와 산업체육기관 간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며, “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”을 근거로 합니다. <p><사실관계 확인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천업체에서 현재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형태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. 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학 후 졸업 시까지 정년퇴직,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·권고사직, 계약(임기)기간 만료,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(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포함)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. 	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(예시) 제9조 ③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,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한 경우에 한합니다. 	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④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됩니다. 	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(예시) 제9조 ②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이 산업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산업체와의 계약해지와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됩니다. 	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(예시) 제9조 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학생 재직확인을 위해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, 매 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제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 	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④ 계약학과 설치 질의 응답 자료집 (201511) 【Q35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직 확인 시 4대보험 모두 가입증명서 제출하며, 해당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일 경우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. 	계약학과 설치질의응답자료집 (201511) 【Q36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학자격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후 입학취소, 제적처리 한다는 내용과 학위취득 후에도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기간 내(근거 참조)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잔여기간이 남아있지 않아 학적 유지와 학위과정을 완료할 수 없어 계약기간 내 학위를 완료하여야 하며, 아닐 시는 재계약을 체결해야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	계약학과 설치질의응답자료집 (201511) 【Q42】 학부신입: 2020.03 ~ 2024.02(4년) 학부편입: 2020.03 ~ 2022.02(2년) 석사신입: 2020.03 ~ 2023.02(3년) 박사신입: 2020.03 ~ 2030.02(10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산업체”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“학교”에 제출하여야 함. <p>{산업체부담금은 산업체에서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 (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,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등)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.}</p>	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(예시) 제8조⑤ {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질의·응답자료집(201512) 【Q43】 }

계약학과 (재교육형) 지원자 사전 고지 확인서

확인내용

- “계약학과”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 (재교육형)을 위한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
- 산업체와 산업체육기관 간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며, “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”을 근거로 합니다.
- <사실관계확인사항>
- 추천업체에서 현재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형태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.
- 입학 후 졸업 시까지 휴학불가 하며, 정년퇴직,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· 권고사직, 계약(임기)기간 만료,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(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포함)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됩니다.
-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,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한 경우에 한합니다.
-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.
- 학생이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산업체와의 계약해지와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됩니다.
- 재학생 재직확인을 위해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,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제적 처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
- 재직확인시 4대보험 모두 가입증명을 해야하며, 해당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일 경우 적용 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.
- 입학자격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후 라도 입학취소, 제적처리한다는 내용과 학위취득 후에도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잔여기간이 남아있지 않아 학적 유지와 학위과정을 완료할 수 없어 계약기간 내 학위를 완료하여야 하며, 아닐 시는 재계약을 체결해야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“산업체”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“학교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{산업체부담금은 산업체에서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(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, 산업체 명의 통장사본 등)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.}

위와 같이 사전확인서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사항에 대한 안내사항에 대하여 협성대학교로
부터 안내받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. .

(학사 , 석사 , 박사) 과정 () 학과 지원자 (서명)
< 반드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지원자 본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>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협성대학교 계약학과 신(편)입학 전형에서 합격자에 대한 학적 생성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

- 수집 · 이용 목적 : 대학원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사안내, 각종 정보 제공 및 리서치 조사 등
- 수집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연락처(주소, 핸드폰, 이메일), 학력사항, 직장명, 직장경력 등
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영구
- 미동의 시 불이익사항 :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으며, 해당 개인정보는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항목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2. 고유 식별 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

- 수집 · 이용 목적 :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신(편)입학 전형 및 합격자에 대한 학적 생성
- 수집 항목 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영구
- 미동의 시 불이익사항 : 위와 같은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)의 수집 ·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으며, 해당 개인정보는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신(편)입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항목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3.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한국대학교육협의회, 한국장학재단, 지원자 출신 최종학교,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법률에 의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공공기관,
-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자료 제공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 등록, 최종 출신학교 학력조회 의뢰, 학위논문취득 통계조사 실행 등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학위번호, 고유식별정보 등
- 제공받는자의 보유 · 이용기간 : 처리 목적 달성시까지
- 미동의 시 불이익사항 :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미동의시 최종합격자는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제한과 출신학교 학력조회 거부등으로 합격 취소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2020 년 월 일

생년월일 : _____년 _____월 _____일

지원자 : _____ (인)

<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은 정자로 날인은 도장 및 사인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날인하여야 함 >

협성대학교 총장 귀하

제10부

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

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

협성대학교(이하 “학교”이라 한다)와 회사명:

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’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협성대학교
학회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계약은 “산업체”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
“산업체”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“학교”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
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(학과 명칭, 학위과정, 학생정원, 설치운영 기간)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
의 명칭, 학습구분, 학위과정, 학생정원,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* 모집처원은 신입학 및편입학 포함한 정원임						
학과명칭	학습구분	학위과정	학위종별	모집정원	설치 운영 기간	교육장소
사회복지학과	주간/주말	학사 (신입)	문화사	40	2020. 3 ~ 2023. 2 (4년)	본교

* 모집처원은 신입학 및편입학 포함한 정원임						
학과명칭	학습구분	학위과정	학위종별	모집정원	설치 운영 기간	교육장소
사회복지학과	주간/주말	학사 (신입)	문화사	40	2020. 3 ~ 2023. 2 (4년)	본교

제 3 조(학생 선발·입학) 입학대상은 10개월 이상 제직한 “산업체”的 소속직원 중 “산업체”가
추천한 자로서, “학교”는 “학교”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
허가한다.

제 4 조(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)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“학교”와 “산업체”가 연 1회이
상 협의하여 편성한다.

제 5 조(수업형태) 수업은 출석 수업,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.

제 6 조(학기 및 수업일수 등)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협성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
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 3 조(학생 선발·입학) 입학대상은 10개월 이상 제직한 “산업체”的 소속직원 중 “산업체”가
추천한 자로서, “학교”는 “학교”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
허가한다.

제 4 조(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)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“학교”와 “산업체”가 연 1회이
상 협의하여 편성한다.

제 5 조(수업형태) 수업은 출석 수업,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.

제 6 조(학기 및 수업일수 등)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협성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
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 7 조(학사관리) “학교”는 “산업체”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, “산업체”는 학생이 업
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.

제 8 조(경비 부담)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“산업
체”와 “산업체”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.

② “산업체”와 “계약학과 학생”的 경비(입학금 포함)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.

1. 산업체 분담비율 : 50%
2. 학생 분담비율 : 50%

③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“산업체”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.

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“산업체”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
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.

⑤ “산업체”는 산업체 부담금의 지체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“학교”에 제출하
고 “학교”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⑥ “학교”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
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.

협성대학교(이하 “학교”이라 한다)와 회사명:
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’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협성대학교
학회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계약은 “산업체”的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
“산업체”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“학교”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
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(학과 명칭, 학위과정, 학생정원, 설치운영 기간)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
의 명칭, 학습구분, 학위과정, 학생정원,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* 모집처원은 신입학 및편입학 포함한 정원임						
학과명칭	학습구분	학위과정	학위종별	모집정원	설치 운영 기간	교육장소
사회복지학과	주간/주말	학사 (신입)	문화사	40	2020. 3 ~ 2023. 2 (4년)	본교

제 9 조(입학취소 및 제적처리) ① '산업체의 강요' 또는 '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'에 따라 학생이 제1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등 계약은 해지된다.
② '산업체'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학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'咎'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③ '학교'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,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·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다만 '학생'이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 체불·반복되는 휴업(휴직)·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④ '학교'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 10 조(산업체 시설사용) ① '학교'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'산업체'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'산업체'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짧기간이고,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.

제 11 조(대학 시설사용) "학교"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.

제 12 조(관련 규정 적용 등) 계약학과 학생은 협성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.

제 13 조(보직,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) ① 이 계약서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.
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, 계약학과에서, 설치·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계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(단, 소속변경 없음)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.
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"산업체"가 계속 부담한다.

제 14 조(특수조건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성대학교 학칙, 계약학과 설치·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,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쟁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"학교"와 "산업체"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,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학교명: 협성대학교

주 소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

업체명: _____

주 소: _____

제 9 조(입학취소 및 제적처리) ① '산업체의 강요' 또는 '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'에 따라 학생이 제1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등 계약은 해지된다.
② '산업체'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학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'咎'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③ '학교'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,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·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다만 '학생'이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 체불·반복되는 휴업(휴직)·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④ '학교'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리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 10 조(산업체 시설사용) ① '학교'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'산업체'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'산업체'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짧기간이고,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.

제 11 조(대학 시설사용) "학교"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.

제 12 조(관련 규정 적용 등) 계약학과 학생은 협성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.

제 13 조(보직,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) ① 이 계약서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.
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, 계약학과에서, 설치·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계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(단, 소속변경 없음)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.
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"산업체"가 계속 부담한다.

제 14 조(특수조건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성대학교 학칙, 계약학과 설치·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,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쟁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"학교"와 "산업체"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,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학교명: 협성대학교

주 소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

업체명: _____

주 소: _____

총장 치무대리 오병석 (직인)

대표자 _____ (직인)